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재외국민 대상 범죄 제재〉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46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외국민 대상 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조치	2
2. 부칙(시행일)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년 11월 14일
3. 회부일자 : 2025년 11월 17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범죄피해, 실종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서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이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실종 사건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고수익 일자리 정보 등이 범죄 유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관이 해당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재외공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외국민 대상 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조치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외국민 대상 범죄에 대한 조치) 재외공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외교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실무상 재외공관이 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별도 제출의견은 없음.

나. 검토의견

1)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현행 제재체계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¹⁾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명시적인 유통금지 규정과 함께, 단계적인 심의 및 시정조치 체계를 두고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²⁾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1항제9호는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 ③ (생략)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고, ②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가 이루어졌으며, ③ 해당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명령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요건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법체계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유통금지 및 삭제·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실제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전 참전 전투원 모집글’, ‘해외 범죄피해 국민의 신상정보 유포’ 등의 사안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특히 ‘해외 범죄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재외공관장이 직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필요 조치를 건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제재조치 요청 사례 ＞

연 번	요청자	대상기관	요청일자	내용
1	외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2024.05.13.	인터넷 커뮤니티상 우크라이나전 참전 전투원 모집글
2	재외공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4.09.27.	태국 내 우리 국민 범죄피해 연루 등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동영상
3	외교부장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05.08.	아프리카 지역 내 범죄피해 우리 국민 신상정보 등 유포 유튜브 동영상

※자료: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2026.02.11.)

참고로, 현행 법률 체계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주체로서 최종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³⁾에 따라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정보 내용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심의기구임.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 9. (생략)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정보에 대한 인지 및 조치 요청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차단 체계와 영사조력 제도를 연계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최근 해외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사기 등 범죄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고수익 일자리 정보 등으로 유인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외공관이 해당 정보를 조기에 인지하여 관계 기관에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필요성은 인정됨.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등에서 수사기관 또는 관계 기관이 불법 촬영물 등 특정 범죄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 아동·청소년(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항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촬영물등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제14조4)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제14조의25)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만, 유사 입법례의 경우 규제 대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반면, 동 개정안은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범위와 판단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해석상 모호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⑤ (생략)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⑤ (생략).

< 제재조치 요청 불법정보의 대상 비교 >

구 분	개정안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요청 대상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요청 주체	재외공관장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불법성 확인	인지한 경우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경우

입법적으로 대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범죄와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재조치 요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다양한 유형과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심의기관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의 장이 스스로 인지한 정보를 선별·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판단역량의 한계,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검열 논란, 업무 부담 증가 및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등으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3항제1호가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명령 등의 요건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외공관장이 직접 요청하는 방식보다는 보고 절차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제재조치 요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통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종합적으로 볼 때, 재외국민 대상 범죄 예방과 보호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정책적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법체계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요청 주체와 절차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부칙(시행일)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의 유통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차단 체계를 전제로 영사조력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심의 및 시정요구 절차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재외공관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또한 외교부의 실무 운영 방식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절차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시행령 개정이나 별도의 하위법령 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음.

따라서, 개정안이 수용될 경우에도 제도의 실질적 운영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정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63